



② 삭제 <2014. 3. 1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 3조(구성), 제8조(안전제출), 제10조(주관 등)의 교무처 명칭은 '교학처', 교무처장의 명칭은 '교학처장', 기획처장 명칭은 '기획홍보처장' 으로 명칭을 개정하고, 학생처장은 직제폐지로 삭제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 3조(구성)의 입학처장 명칭은 ‘입학홍보1처장’ , 기획홍보처장 명칭은 ‘기획처장’ , 국제교류실장 명칭은 ‘국제교류처장’ 으로 개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 3조(구성)의 기획처장 명칭은 ‘기획조정실장’ 으로 개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